◉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-17호

「식품위생법」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24일
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처분대상

업종 (등록번호)	업소명 (대표자)	소재지
식품제조가공업(주류) (제20130018125호)	연일양조장 (신*식)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199번길 13

2.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

○ 과태료 40만원 부과

(*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20%감경된 과태료(320,000원)를 납부가능하며,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(053-589-2798)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)

3. 처분원인(과태료 부과)이 되는 사실

○ 2020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(2차위반)

* 1차위반: 사전통지(2019.7.9.), 종료알림(2019.8.1.)

** 2차위반: 재적발일(2021.4.27.)

4. 근거법령

○ 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

○ 「식품위생법」 제101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[별표2] 과태료의 부과기준 1. 가., 2. 개별기준 자목 1)

5. 의견제출

○ 제출기한: 2021. 9. 23.(목) 까지

○ 대상: 본인 또는 대리인

○ 접수처: (우42612)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

Tel: 053-589-2798 / Fax: 053-592-2709 / E-mail: lwj0929@korea.kr

○ 제출방법: 구술, 정보통신망 또는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호서식(의견제출서)에 의한 서면

6. 기타사항

-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,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- 문의: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(Tel: 053-589-2798, Fax: 053-592-2709, E-mail: lwj0929@korea.kr)